

의안번호	제114호
의결연월일	2020. 9. 2.

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8월 25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5일
- 다. 상정일자 : 2020년 9월 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사회적경제과장)

□ 제안이유

- 빈부격차·고용불안·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
- 정부 주도 사회적경제 육성에서 지역·시민 친화적 정책집행 역할조명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 되고 있음.
- 이에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 육성하고,
- 특히, 논산공동체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논산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마련하여 지역에 적합한 사회경제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제명 “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” 를 “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” 로 변경
-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(안 제3조의 2)
- 논산공동체기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제정 (안 제4조)
-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~ 제8조의 3)
-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의 조성·운용 결산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24조~ 제3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5. 토론 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